

문재인 대통령 비판 풍자대자보 게시 청년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

1. 어제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5부(부장판사 이경희)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풍자대자보를 대학 내에 붙인 혐의로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20대 청년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.
2. 한변의 이동찬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1심과 항소심을 모두 수행한 이 사건에서, 당초 대학 당국은 해당 청년이 대학 내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강행하여 기소하였고, 1심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. 이 판결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많은 비판들이 국내외에서 있었고, 심지어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 까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로 등재되었다.
3.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위해 긴 인고의 시간을 보낸 젊은 청년과 그 변호인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, 타당하고 현명한 판결로써 사법정상화에 기여한 재판부에도 경의를 표한다.

2022. 6. 23.

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

회장 이재원